청원 업무 매뉴얼

2022. 12.





목 차

I. 청원 제도 일반 ······ 1
01. 청원 제도 개요1
02. 「청원법」연혁 5
03. 청원 유사 제도 7
04.「청원법」전부개정 주요내용 11
Ⅱ. 청원 법령 해설14
01. 목적 14
0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
03. 적용범위 18
04. 청원기관 19
05. 청원사항 23
06. 청원 처리의 예외 26
07.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30
08. 청원심의회 31
09. 청원방법 38

목 차

Ⅱ. 청원 법령 해설
11. 청원서의 제출 44
12. 청원의 접수 48
13.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53
14. 접수·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 58
15.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61
16.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67
17. 청원의 취하 70
18. 청원의 조사 72
19. 조사의 방법 73
20.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 75
21. 청원의 처리 등 77
22. 이의신청 84
23. 청원제도의 총괄 등 89
24. 청원의 사후관리 90
25. 모해의 금지91
26. 차별대우의 금지 91
27. 벌칙 91

1. 청원 제도 일반

01. 청원 제도 개요

□ 청원권 개념과 의의

- 청원권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를 말하며, 헌법재판소는 청원권을 "공권력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며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 하는 것이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청원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
- 청원은 국가가 이에 대하여 수리하고 심사할 의무는 있으나 재결이나 결정이 필수적이 아닌 점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는 다름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자기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나, 청원은 권리나 이익이 반드시 침해됨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제3자를 위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청원할 수 있음
- 청원권은 기원적으로는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에 국가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음
- 오늘날은 국민의 희망을 국가에 개진하는 민의 반영의 통로 내지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고 국정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강해지고 있음

□ 청원권 도입 연혁

- 청원권이 역사적으로 처음 문서화된 것은 1698년 영국의 권리장전이며, 1791년 미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규정됐고,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에 기본권으로 명문화된 후 많은 국가의 헌법에 도입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제헌 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있었고, 국회법 ('48.10.2. 제정)과 지방자치법('49.7.4. 제정)에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가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청원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청원법은 1961년에 제정('61.8.7.)되었음

□ 청원권 특징(기능)

- 다른 권리구제절차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행사될 수 있는, 즉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통상의 정규적인 구제절차(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에 대한 부가적·보완적으로 부여되는 비정규적 권리구제절차
- 직접 국가에 대하여 국민의 불만과 고충을 진술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현재 직접 침해당하는 것과 관계없이 행사 할 수 있으며, 개인적 이익 보호 뿐 아니라 사적 또는 공적 이익과 관계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음
- 국민과 국가공권력 간의 접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과 국가 사이의 대화를 보장(국민의 소리와 반응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사를 존중)
-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보장을 실질화하는 수단이 되며, 국민의 주권자적 지위의 국민이 국정운영에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이면서 국민 주권을 구체화하는 제도 중 하나(간접민주제·대의제 결함을 보완하는 수단)
- 의회에 의한 행정부 통제(국회법·지방자치법상 청원) 및 행정부 내부의 통제(국가기관의 비리와 부조리의 시정) 기능
- 청원대상이 거의 모든 국가작용에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청원내용에 대하여 청원의 대상기관을 구속하지는 못함(국가기관이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재량사항)

□ 근거 법령 :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청원법 주요 내용

○ **청원기관** :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소속기관), 행정권한 위임·위탁 법인·단체·개인

○ **청원사항**: ^①피해 구제 ^②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시정·징계 요구 ^③법령 제·개정 ^④공공제도·시설의 운영 ^⑤기타 청원기관 권한 사항

○ 청원절차 : 제출(소관기관) → 조사 및 심의(청원심의회) → 결과 통지(90일, 60일연장可)
 *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법령 제·개정, 공공시설·제도 운영) 가능

○ 처리예외 : ^①국가기밀·공무상비밀, ^②수사·재판 등 구제절차 진행중, ^③허위 사실로 타인 형사·징계처분 받게함, ^④허위사실로 국가기관 명예 실추, ^⑤사인간의 관계·사생활, ^⑥청원인 신원·내용 불명확

판 례 청원처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39, 1997, 7, 16.]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u>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당사자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u>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나,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원 소관관서는 <u>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결과통지함으로써 충분하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u>

· 천원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163, 2014. 3. 17.]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기관 등 청원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청원대상기관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그 결정에 기초한 청원 불수리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판 례 국회법 제1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5헌마604, 2006. 6. 29.]

청원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입법형성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청원의 내용과 절차는 물론 청원의 심사·처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바, 의회에 대한 청원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청원 심사의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이처리되므로 청원서 제출단계부터 의원의 관여가 필요하고, 의원의 소개가없는 민원의 경우에는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청원의 소개의원은 1인으로 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판 례 지방자치법 제6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54, 1999. 11. 25.]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의원이 미리 청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소개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의 남발을 규제하고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소개의원이되기를 거절하였다면 그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는 것이므로지방의회에서 심사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전혀 없어 심사의 실익이 없으며, 청원의 소개의원도 1인으로 족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도의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ㆍ최소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 레 군인연금법 개정 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851, 2004. 5. 27., 각하]

청원법 제8조는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배된 청원서를 접수한 관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내용의 청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이를 수리, 심사 및 통지를 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판 례 청원법위반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081, 판결]

청원서에 청원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청원법 제6조에 의하면 참고자료는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하도록되어 있다) 청원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기명날인이 되어있는 등의 사소한 형식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청원서가 청원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판 례 청원법위반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27, 판결]

청원법 제11조에서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청원의 내용이 남김없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면 바로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청원내용의 일부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점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청원의 중요취지가 허위인 것으로 평가되게 하는 등으로 그로 인하여 국가기관의 의사형성을 오도할 객관적인 우려가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없다.

02. 청원법 연혁

1. 청원법 제정 (법률 제675호 1961. 8. 7. 제정, 1961. 9. 7.시행, 11개 조문)

구 분	주요내용	비고
청원사항	①피해의 구제 ②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③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④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모든 사항이 청원 가능
불수리사항	①법규에 위반된 것 ②재판에 간섭하는 것 ③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	
청원방법	• 청원의 성명, 직업, 주소 서명날인 (현주서 증명서류 첨부) • 우편으로만 허용	청원권행사 제한, 처리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
청원서제출	• 소관관공서에 제출, 동시에 2이상의 기관 제출금지	
청원처리	• 청원기관은 청원을 성실공정 신속하게 심사처리 통지	
기타	• 모해의 금지 (10년이하) • 차별대우 금지 (5년이하)	

2. 1963년 전부개정 (법률 제1283호 1963. 2.26. 전부개정, 1963. 2.26. 시행)

구 분	주요내용	비고
목적조항	• 헌법조항의 직접언급 삭제	
청원관서 • 모든국가 또는 공공단체		
동일청원	• 동일내용의 청원 (청원이유가 달라도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경우)	
청원불수리	• ①법규에 위반된 것 ②재판에 간섭하는 것 ③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	불수리 축소
청원방법 • 다수인의 공동청원, 대표자 선임제		
청원서제출 • 청원사항 주관관서에 제출, 특정처분의 시정요구는 처분관서에 제출		
기타	• 청원의 반복, 중복 억제를 위한 청원서 반송제도 신설 • 이중청원의 금지 신설	

3. 1997년 타법개정 (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

구 분	주요내용	비고
청원서제출	•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서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 (내각사무처장 → 총무처장관)	

4. 2005년 전부개정 (법률 제767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6. 2. 5. 시행)

○ 제도의 현실화, 국민의 청원권보장, **청원의 활성화(전자문서 제출)**

구 분	주요내용	비고
대상기관	• 용어·대상기관범위 변경 (국가 또는 공공단체 → 국가기관, 지자체, 법령위임위탁 법인·단체·개인 등)	
청원방법	 청원방법 간소화 (동·이장 발행 주소거소 증명서류 확인삭제) 청원서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불수리 대상확대	①수사,감사,재판 등 구제절차 진행중 인 때 ②허위사실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사항 ③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④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때	·감사수사포함 으로 청원권 기능 약화
벌칙규정 삭제	• 차별대우금지규정 위반 공무원처벌규정의 삭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	
처벌조항 현실화	• 청원인에 대한 처벌조절 (징역형 10년형 → 5년, 벌금 20만원이하→1천만원이하)	

5. 2007년 타법개정 (법률 제8171호 2007. 1. 3. 타법개정, 2007. 7. 4. 시행)

○ 전자정부법 개정반영

구 분	주요내용	비고
청원방법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전자정부법」"	

6. 2014년 일부개정 (법률 제12922호 2014. 12.30. 일부개정, 2015. 3.31. 시행)

○ 청원서의 보완요구, 청원심사과정의 진술절차, 이의신청 절차 신설

구 분	주요내용	비고
보완요구	• 청원서 미비사항 보완요구 신설	
관계인 진술 • 청원심사와 관련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 청취 신설		
이의신청 • 청원 처리기간 이내에 미처리 시 이의신청 신설		

7. 2020년 일부개정 (법률 제16890호 2020. 1.29. 일부개정, 2020. 1.29. 시행)

○ 벌칙 규정(벌금) 현실화

구 분	주요내용	비고
벌칙	• 벌금형의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현실화 ※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이 되도록 징역형과 벌금형 균형	

03. 청원 유사 제도

□ 민원

-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문서, 구술 또는 전화로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중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구분됨(일반민원은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구분)
- 민원에 관한 근거법령은 민원의 정의, 민원의 신청방법·접수·처리, 민원 처리기간계산 등 민원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인·허가 등은 각 개별 법령, 고충민원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청문·공청회 등은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에서 규율함

□ 민원과 청원과의 관계

- 청원은 「청원법」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에 민원은 「민원처리법」에 근거하고 있어 각각 근거 법률을 달리하고 있으나 청원과 민원을 내용으로 구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움
 - ☞ 법적으로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실제 제도 운영상 청원은 민원, 국민제안, 고충처리 등 유사제도들과 엄격한 구별은 어렵다(한국행정연구원)
- 같은 내용이라도 청원인(또는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청원법령에 따라 청원(또는 민원법령에 따라 민원)을 제출하면 청원(또는 민원)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청원과 민원의 구분은 요구 주체(국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됨
 - 같은 사안이라 해도 청원으로 신청된 경우 청원법상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해야 하며, 민원으로 신청된 경우는 민원처리법상 처리 절차로 처리해야 함 (행정청이 임의로 청원으로 신청된 사항을 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곤란함)
- 청원은 민원과 별개로 보완적·최종적으로 부여되는 시정요구 및 구제절차로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민원에 비해 대상 및 적용기관 범위가 넓고, 심의회를 거쳐 90일동안 심층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는 점에서 민원과 별개로 청원을 제출할 실익이 있음
 - *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확정된 사항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포함(민원은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다만, 민원처리법에서는 민원을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여기서 "요구"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하는 일체의 의사를 뜻하므로,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원법상 청원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이는 '청원'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는 청원은 크게 보아 민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 민원의 종류 중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그리고 고충민원은 청원과 유사한 면이 존재한다(김성배, 청원권의 기원과 청원법의 개선방향)

□ 국민제안

-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으로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등 행정청으로 하여금 제안을 상시 접수·심사하게 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임
- 국민제안은 「행정절차법」제52조의2에 근거를 두고 「국민제안규정」 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청원법에 따른 청원사항에는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므로 내용만으로 청원과 국민제안을 명확하게 구분 하기는 어려우나, 국민제안은 행정제도나 운영 등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창의성"을 바탕으로 행정청에 제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일정한 시상을 하고 실제 도입하여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임
- 민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라도 청원인(또는 제안자)의 의사에 따라 청원이나 국민제안으로 제출하면 각각 해당법령(청원법령,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청원과 국민제안의 구분도 요구 주체(국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됨
 - ☞ 청원으로 신청된 사안을 "창의성"에 바탕한 것이라 임의로 판단하여 제안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곤란함

< 참고1 > 청원·민원 제도 비교

구분	청 원	민 원
근거	헌법(제26조), 청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정의	■ 헌법상 기본권으로 다른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 보완적·최종적으로 부여되는 구제 절차 (청원법상 '청원'에 대한 정의는 없음) ■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민원처리법 제2조) * 종류: 일반민원(법정·질의·건의·기타민원), 고충민원
	불만 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 요청	
	1. 피해의 구제	1. (법정민원) 인·허가, 장부·대장 등재 신청, 법률관계 확인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 설명, 해석 요청
-11.11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요구 4. (기타민원) 법정·질의·건의·고충민원 외에 특정한 행위 요구
대상 (종류)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 3호(법령 제·개정)·4호(공공 제도·시설 운영)는 공개청원 가능	국민의 권리침해,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처리 예외)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u>확정된 사항은 청원 가능</u>	(처리 예외)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및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적용 기관	■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과 그 소속기관 ■ 행정권한 위임·위탁 기관	■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행정사무 처리 기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 행정권한 위임·위탁 기관
	■ 소관 청원기관에 제출(<u>서명</u> 한 문서) ■ 방문, 우편, FAX, 온라인 제출	■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문서 또는 구술·전화) ■ 방문, 우편, FAX, 온라인 제출
제출	■ 공동청원(집단적 관심형성·공론화 및 국가적 해결촉구 역할) ■ 시스템 : 온라인청원시스템	■ 다수 민원인 신청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 시스템: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전자민원창구
처리	■ 제출 → (조사)·심의(청원심의회) → 통지	■ 신청 → 처리(내부검토) → 통지
처리 절차	* 조사 : 자료제출 요구,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실지조사, 감정의 의뢰 등	
처리 기간	■ 90일 이내(필요 시 60일 연장)	■ 7일 : 일반질의, 고충민원 / 법정민원 : 개별법 ■ 14일 : 법령해석질의, 건의민원 / 기타민원 : 즉시
기간	※ 민원과 비교하여 심층 검토 처리	* 필요 시 연장가능하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 동의받으면 한차례 다시 연장 가능
이의 신청	■ 30일 이내(⇒15일 이내 결정 / 연장규정 없음)	■ 60일 이내(⇒10일 이내 결정 / 10일 이내 연장)
신성	* 공개부적합, 기간내 미처리 경우만 이의신청 가능	*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만 이의신청가능

〈 참고2 〉 청원·민원·제안 제도 비교

구분	청원	민원	국민제안
근거	헌법(제26조), 청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치법, 국민 제안규정(영)
	■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희망을 진술하고, 심사 및 처리를 요구 (법상 정의는 없음)	■국민이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행위를 요구(법§2) ①일반민원(법정·질의·건의·기타) ②고충민원	■국민이 행정청에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 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규정§2)
정의	청원사항(청	원법 제5조)	유사 제도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의 요구 법령 등의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고충민원 - 건의민원 건의민원, 국민제안 민원, 국민제안
적용 기관	■ 국가기관 -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 위임·위탁 기관	■ 행정기관 -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행정사무처리기관에 한함)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 공공기관 - 행정권한 위임·위탁 기관	■ 행정청 -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 -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 위임·위탁 기관
제출 방법	■ 문서(서명 要)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 공동청원 가능	■ 문서 * 기타민원은 구술·전화 可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 다수인 민원 가능	■ 문서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 공동제안 가능
공개	■ 공개청원 가능 * 법령 제·개정, 공공제도·시설 운영	■ 공개관련 규정 없음 * 민원인 요청시 공개	■ 공개·비공개 선택 가능
시스템	■ 온라인청원시스템	■ 국민신문고,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	■ 국민신문고
처리 절차	 ■ 제출 → (조사)·심의 → 통지 * 조사 : 자료제출 요구, 청원인, 이해 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실지조사, 감정의 의뢰 등 	■ 신청 → 처리(내부검토) → 통지	■ 제출→심사(채택여부)→통지 * 채택시 실제정책에 활용, 우수제안의 경우 포상
	* 심의 : 외부전문가 1/2이상 참여 하는 청원심의회 심의		
처리 기간	■ 90일 이내 (필요 시 60일 연장)	■ 7일(일반질의, 고충민원) ■ 14일(법령해석질의, 건의민원) ■ 기타(즉시), / 법정민원(개별법) * 필요 시 처리기간 범위 내 연장	■ 1개월 이내 (연장 규정 없음)
이의 신청	■ [®] 공개청원의 공개부적합 결정, [®] 기간 내 미처리만 가능 * 30일내 이의신청(→15일내 결정)	■ 법정민원의 거부처분만 가능 * 60일내 이의신청(→10일내 결정)	■ 불채택에 대한 재심사 요청 * 15일내 요청(→1개월내 결정)

04. 「청원법」전부개정('20.12.22.)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하여 1961년 「청원법」이 제정되었으나 청원 제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법상 청원 처리절차가 지나치게 간략히 규정되어 있고 시행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의 청원권 실현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 조사·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 청원 처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청원법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음

□ 주요 내용

○ 온라인 청원의 실질화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 운영
- 온라인 청원은 서명 대체하여 전자적 본인 확인
- 전자적 형태의 모든 정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동영상 등)가 전자 문서에 포함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로 개정

○ 공개청원 제도 도입

- 청원을 제출한 청원인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
- 청원심의회 심의 거쳐 결정, 공개청원 결정일부터 30일간 국민 의견 수렴

○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절차 강화

- 청원심의회 설치·운영 : 공개청원, 청원조사 결과 등 심의
- 청원조사 방법, 관계기관 및 부서간 협조절차 등 구체적 명시

○ 청원기관 중 국가기관 구체적 명시

- 청원대상 국가기관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 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으로 구체적 명시

○ 기타 청워제도 미비규정 보와

- 청원의 접수·처리상황 공개, 반려·취하, 이의신청 등 처리 절차 보완
- 청원기관장의 의무(주관부서, 인력배치 등), 청원의 사후관리(만족도), 청원 제도 총괄(행안부) 등 규정

く 참고3 > 청원법 개정 사항 (시행 : '21.12.23. / 온라인・공개청원은 '22.12.23.)

분 야	개 선 내 용	기 존	현 행
목적·운영	① 법 목적 재정립	∘ 법의 핵심 목적 불분명	○ (명확화)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청원처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는 청원법 제정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1조)
	② 청원기관장 의무	∘ 관련 조항 없음	∘ (신설) 국민의 청원권 존중, 소관법령 정비, 청원 주관부서 및 인력 적정 운영 의무 명시 (제7조)
청원대상 기관	③ 청원기관 명확화	∘ 청원기관을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기관으로 명시	∘ (명확화) 국가기관을 국회·법원·헌법 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 행정기관으로 명시 (제4조제1호)
		* 국가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 하여 이해될 소지	
온라인 청원	④ 온라인청원 운영 규정 마련	∘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상 전자 문서 [*] 포함)만 청원 가능	∘ (확대) '전자문서'의 범위를 전자문서 법상 전자문서 [*] 로 확대 (제9조)
		* 법령상 규정된 서식을 전자화한 문서(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된 것) 자정된 전자문서 서식이 없고	* 전자적 형태의 모든 정보(e-메일, 휴대전화 문자, 동영상, 국민신문고 민원 형태 등)가 전자문서에 포함
		서명 요구로 온라인 청원이 사실상 곤란	
		∘ 관련 조항 없음	∘ (신설) 온라인청원시스템 설치 등 온라인청원 실시 관련 절차 규정
		☞ 온라인 청원 절차 미비	(제10조 등)
공개청원	⑤ 공개청원의 도입	∘ 관련 조항 없음	∘ (신설) 청원인이 원할 경우 공개청원 [*] 으로 제출 가능 (제10조②)
			* 제5조 제3호 및 제4호 (법령 제·개정, 공공 제도·시설 운영)
	⑥ 공개청원 처리 절차 명시	∘ 관련 조항 없음	∘ (신설)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결정 통지, 국민의견 수렴 등 (제13조)
			* 15일내 결정 → 30일간 의견수렴
	기 공개청원 심의및 통지절차 명시	∘ 관련 조항 없음	∘ (신설)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를 온라인 청원시스템에 공개 (제21조)

분 야	개 선 내 용	기 존	현 행
청원 조사 및 심의	8 각 기관별 '청원 심의회' 설치	∘ 관련 조항 없음	∘ (신설) 공개청원 여부, 청원 조사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한 청원심의회 설치와 구성·운영 근거 규정 (제8조)
	⑨ 청원 조사 방법,관계기관 부서간협조	∘ 관련 조항 없음 * 심사필요시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규정만 있었음	· (신설) 청원 조사 방법, 관계기관 부서간 협조 절차 (제18·19·20조) * 조사 : 자료제출 요구,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의견진술 실지조사 감정 의뢰 등
기타 청원처리 절차	① 청원처리의 예외	∘ 감사·수사·재판 진행, 허위 사실, 사인간의 관계, 청원인 불분명 시 불수리	○ (수정·보완) 불수리 → 청원처리의 예외로 조항명 변경 국가기밀, 공무상 비밀을 청원처리의 예외사유에 포함 (제5조) * 민원처리법 미처리 대상과 유사
	② 접수·처리 상황의 공개	∘ 관련 조항 없음	∘ (신설) 청원인에게 청원 처리상황을 알리고, 공개청원은 처리상황을 온라인 청원시스템에 공개 (제14조)
	③ 반려·취하 등	∘동일내용의 청원을 동일기관 또는 2이상의 기관에 반복 제출할 경우 반려	∘ (명확화) 반복청원의 결정시 고려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제16조)
		∘ 관련 조항 없음	∘ (신설) 청원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청원인이 취하 가능 (제17조)
	④ 이의신청	○ 청원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 되지 않을 경우만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가능기간, 신청시 처리	○ (확대) 청원심의회의 공개청원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도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 이의신청은 30일내 신청, 15일내 처리 (제22조)
	⑤ 청원제도 총괄	기간 관련규정 없음	∘ (신설) 행안부의 제도총괄 명시, 청원제도의 운영 전반 지도·확인·점검 (제23조)
	⑥ 사후관리	∘ 관련 조항 없음	∘ (신설) 청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 사항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 (제24조)
	⑦ 부칙		∘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하되, -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 및 동 시스템 운영을 전제로 한 관련 조항은 2년 경과 후 시행

Ⅱ. 청원 법령 해설

01. 목적

청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원법은 헌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참고 > ----

- ❖ 「헌법」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 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원법 시행령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법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법에 의한다.
- 청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은 국회에 대한 청원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과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이 있으며, 이들 법은 청원에 관한 일반법인 청원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자와 군수용자가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여 청원하는 경우, 이들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2.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 3.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청원법 시행령은 청원법 제4조의 청원기관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청원 기관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해 적용한다.
-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헌법기관에서는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 자체적인 규정을 적용한다.

--- < 관계법령 > -----

- ◆「국회법」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③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 ④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원요지 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 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 청원의 요지, 소개 의원의 성명 또는 동의 국민의 수와 접수 연월일을 적는다.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 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⑧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 ⑨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87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7조(청원)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 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⑥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2조(청원) ① 군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제7조에 따른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군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 공무원이 군수용자의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교정시설의 교도관등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청원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청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 ⑥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03. 적용범위

청원법 제3조(적용범위)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청원법은 청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국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국회에 대한 청원과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은 청원법 제2조에 따라 청원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적용배제 조항 > ----

- ① 청원심의회(제8조), ② 청원방법(제9조), ③ 온라인청원시스템(제10조),
- ④ 공개청원(제11조제2항), ⑤ 공개청원 공개여부 결정통지 등(제13조),
- ⑥ 접수·처리상황의 통지 및 공개(제14조), ⑦ 청원서의 보완요구 및 이송(제15조),
- ⑧ 청원의 처리 등(제21조), ⑨ 이의신청(제22조), ⑩청원제도의 총괄 등(제23조)

04. 청원기관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개정되기 전 청원법에서는 청원대상기관을 국가기관, 지자체 및 행정권한 위임·위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관을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 개정된 법률에서는 국가기관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개정 전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청원기관은 청원의 내용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므로, 청원인은 청원서를 청원사항을 관할하는 소관기관에 제출해야하고, 해당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등은 법 제4조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되는지?

- A. 해당 교육기관이 공립인지 사립인지로 청원기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 해당 교육기관의 소관업무에 법령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권한'이 있는 경우 청원기관에 해당하게 됨. 예를 들어 법령에 따라 장애인 업무를 위탁받은 사립학교가 있을 경우, 이는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 되므로 청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청원기관에 해당하게 됨



민원처리법에서는 행정기관에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법에서는 청원기관에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은 청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지?

- A. 청원법 제4조제3호는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개인은 소위 '공무수탁사인'에 해당됨
- A.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청원법상 청원기관의 해당여부는 청원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른 행정권한'의 존부를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일반유치원은 청원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령에 따라 장애인 돌봄 업무를 위탁받은 유치원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청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청원기관에 해당하게 됨

----- <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中 > ------

- ❖ 사인(공무수탁사인):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특정한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사인(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함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립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경찰권이 부여된 비행기의 기장(항공보안법 제22조), 선박의 선장(선원법 제6조),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 등(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청원을 접수한 기관이 소관업무가 아닌 기관이거나 또는 소관을 특정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청원기관 지정은 어떻게 하는지?

- ▲. 접수한 청원서가 다른 청원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청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관 청원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함. 청원사항이 다른 청원기관의 소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원을 접수한 기관이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 A. 청원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받은 청원서의 내용만으로 적합한 소관 청원기관을 특정하여 이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기된 청원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소관 청원기관을 정해야 할 것이므로, 청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청원서의 보완요구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면 됨
- A. 다만, 청원내용이 불명확하여 소관을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원법 제6조제6호에 따라 청원 처리의 예외 결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청원 처리의 예외로 종결처리 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 실현을 위해 청원서의 보완요청 등으로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



청원법 제4조의 청원기관에는 소속기관도 해당이 되는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직제상 소속기관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자체의 소속기관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함
- A.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와 공립의 대학·전문대학)· 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고 규정
- A.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은 소관기관의 직제나 직제 시행규칙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규정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확인하시면 됨



청원법 제4조제3호(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따라 공공기관도 청원기관이 되는데,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모두 청원기관이 되는지?

-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이 될 수 있으나, 해당기관이 행사하는 권한이 법령에 따른 행정권한인지 여부에 따라 청원기관 유무를 판단해야 함
- ★. 따라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행사하는 권한이 법령에 따라 국가 기타 행정기관 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기관이 아님(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의 경우에도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상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내부적인 권한 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권한과 관련해서는 청원기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판 례 해고무효등 확인청구 [대법원 2005두8269 판결, 2008.1.31.]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 취소를 공법적 권력관계로 파악할 수는 없고, 오히려 한국마사회법과 이에 근거한 피고 한국마사회의 경마시행규정 및 그시행세칙에 의하더라도 피고 한국마사회가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다는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 한국마사회가 행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밟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경주마의 조교 또는 기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피고한국마사회로부터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그 면허의 요건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일체를 피고 한국마사회가 정할 수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취소하는 것은 경마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마에서의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라므로, 이는 국가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장계 내지 제재처분으로 봄이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다.

법령해석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 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법제처 13-0400)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5항 및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와 관련한 처분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등에서 별도의 위임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각군 참모총장이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환수지시를 하더라도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각군 참모총장의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임전결을 통한 내부위임의 방식으로도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05. 청원사항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 1. 피해의 구제
- 2.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국민은 피해의 구제나 법률·조례 제·개정 등 청원법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다.
- 청원사항은 법 제4조의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모두 청원 사항이 되며, 피해의 구제와 같이 사적이익 보호 뿐 아니라 공적이익과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청원이 가능하므로 청원법상 청원의 내용과 범위는 매우 넓으며,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 청원과 민원 간에는 내용면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민원의 내용에는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것이 포함되는데(행정절차법 제52조의2 국민제안) 이는 청원의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민원은 그러한 것을 '건의'하는 것(간청)이고, 청원은 그것을 '청원'하는 것(국정에참여)이므로, 청원이 민원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며, 그 만큼 더 강력하고 특별한 법적 효과를 갖는다. (이상수, 청원권 이론의 재구성 내용 中)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각 호에 대하여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 處分: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A. 처분성은 법령의 규정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함. 제기된 청원이 사안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결정 등의 처분성 존부는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을 요하게 되며, 처분성의 판단은 개별사안별로 달라짐. 일반적으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제결례 청원각하결정 통보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7-06862 재결, 2017. 5.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청원에 대해 각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u>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를 함으로써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각하 등으로 비록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결정이 바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볼 수는 없어</u>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제결례 청원회신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7-06862 재결, 2017. 5. 16.]

청구인은 무공수훈자의 명칭을 호국지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의 회신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u>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을 수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피청구인은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결정이 바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볼 수는 없어, 피청구인의 청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u>

제결례 청원거부무효확인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97 재결, 2005.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u>통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회신으로서</u> 그 내용이 청구인의 청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원 처리결과를 받은 청원인이 최초 청원에 대해 청원기관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였다고 보지 않고 당초 청원처리의 위법·부당함에 대해 다시 청원을 할 경우 어느 기관이 소관 청원기관이 되는지?

- ▲. 청원인이 최초에 제기한 청원을 소관 청원처리기관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보지 않아 해당 청원처리기관의 처리 자체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청원을 제기할 경우, 이는 청원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청원사항에 해당하므로 청원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청원기관에 청원을 제기할 수는 있음
- A. 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을 판단하여 소관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접수 후 청원을 심의하고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관으로 청원을 이송해서 처리하면 됨. 청원의 심의를 다시 거치더라도 청원처리결과가 위법·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으로 종결 처리함
- A. 청원기관의 청원처리 결과 자체가 아닌 해당 기관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를 청원하는 경우(예, 당초 건축허가 요청을 청원하였으나 불허가 결과 통지 받은 후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청원을 제기), 이 또한 청원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청원사항에 해당하기에 청원의 제기는 가능함. 당초 청원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를 청원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청원에 해당하며, 청원을 접수한 기관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권이 있는 소관 청원기관으로 이송하면 됨

06. 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 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국가기밀이나 수사·재판 진행 중인 사항 등 청원법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청원인(공동청원은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개정된 법률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제목을 '청원의 불수리'에서 '청원 처리의 예외'로 변경하였다.
-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는 어떠한 사항이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며,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는 청원사항 중에서도 어떠한 내용은 처리될 수 없는 지에 관한 규정으로 두 조항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 청원처리 예외의 결정은 청원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후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결과 통지 전까지는 할 수 있다.



청원을 예외처리 할 경우 처리기한이 따로 있는지?

▲. 제기된 청원이 청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청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하여 예외 처리 하려 할 경우에는 청원처리 결과의 통지 전까지(접수 시, 심의 중 모두 포함) 청원 처리 예외 결정을 내릴 수 있음



청원 처리의 예외, 즉 청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

- ▲. 청원법 제6조의 청원 처리의 예외 결정은 청원기관의 장의 소관에 해당함. 따라서 청원심의회의 결정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청원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수는 있음), 청원기관의 장이 판단하면 됨
- A. 청원심의회의 심의 중 청원 처리의 예외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청원심의회는 이에 대한 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며, 예외 결정은 청원기관의 장이 하게 되므로 실무상 청원기관 장의 위임전결을 받은 공무원이 처리하면 됨



청원심의회에서 심의 중인 청원이 청원 처리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청원심의회가 직접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지?

★. 청원심의회의 심의 중 청원 처리의 예외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심의회는 이에 대한 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며, 청원기관의 장이 예외 처리를 하게 됨. 따라서,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뒤 청원심의회의 심의 전인지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청원 처리의 예외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청원이 대량으로 접수되었는데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비밀지정 규정이 생성되거나 변경되어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되어 버린 경우에는 접수된 청원 전부를 심의의 착수 또는 진행 정도와 관계없이 예외 처리 할 수 있음



청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되어 청원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다면 실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A. 일반적으로 청원 처리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원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청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청원은 종결 처리를 하고, 청원인에게는 청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항을 청원법 제6조에 따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함



재판이나 행정심판 중(청원 처리 예외 사유에 해당)에는 청원 처리를 하지 않으나, 구제 절차가 종료된 후 청원이 제기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4. 원칙상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청원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기관의 장이 당해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청원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청원 처리결과와 함께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



재판 중인 경우에는 청원 처리 예외에 해당하는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 청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청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청원인의 청원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음. 또한, 법원이 청원기관의 소관 사무(예, 허가거부처분)에관하여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더라도 청원기관의 장은 이론적으로는 법원의결정과는 다른 처리가 가능함. 즉 법원의 판단과 다르게 허가처분을 할 수 있음.이 경우, 법원이 허가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행정청의 허가처분이위법해지는 것은 아님



재판 중인 경우에는 청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되나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청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재심청구 등 불복절차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원 처리의 예외에 이러한 사항들이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 청원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재판결과의 청원처리 예외추가(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자 함)는 국민의 청원권을 축소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청원법 제정 당시('61년) 청원의 불수리 사항에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 규정되었으나 '05년 전부개정되면서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재판결과에 대한 청원이 시대·상황변화에 따른 사법적 구제절차의 사각지대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임
- ★. 헌법으로 국가에 청원 심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청원 예외 적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할 것이므로 확정된 판결은 재심 이외의 사유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비판은 가능할 것이므로 청원사항에 포함이 된 것임



청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이 되어 청원이 예외 처리되었다고 통지를 받은 청원인이 취할 수 있는 불복절차는?

- ▲. 청원의 예외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원법 제22조의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청원의 예외처리로 청원법에서 규정하는 청원제도는 종결되게 됨. 따라서 청원인이 이에 불복을 하고자 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 ★. 청원 처리 예외의 통지로 종결된 것을 불수리 처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청원 처리 예외 결정에 대한 처분성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하는 것이며, 청원 처리의 예외 결정에 처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

법령해석 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가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할 때,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한지?(법제처 해석사례 21-02 회신)

하나의 법률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어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이의신청 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일반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 제출된 청원서에 하자가 있는 지의 여부는 접수 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므로 수리(또는 불수리)와는 별도로 청원서류는 접수는 하여야 함. 다만, 접수 단계에서 청원서의 하자가 명백하여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원법 제6조제6호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개정된 청원법에서는 청원서를 불수리 할 수 없는지?

▲. 개정법에서는 청원의 불수리가 청원 처리의 예외로 변경되었음. 따라서 개정법에 의할 경우 불수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원서는 다 접수하여야 함. 가령 청원인이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문서를 도저히 청원서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불수리를 하여야 하지만, 불수리라는 법 개념이 사라졌으므로 청원법 제6조제6호에 따라 청원 처리의 예외로 처리해야 함

07.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청원법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청원법을 운영하면서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 이는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원제도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법에 신설된 규정이다.



청원법 제7조에서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로 정해야 하는지?

A. 청원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정해야 함. 청원 업무의 성격은 민원과 유사하므로 제도적으로 민원을 기반으로 하는 부서에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적합할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지정할 수 없으니 청원기관 내에서 유사 업무 관련 부서 간 협의 등을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주관 부서가 정해지면 해당 부서 내에서 업무분장 등을 통해 청원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을 지정해야 할 것임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정비해야 할 법령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 청원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청원기관 별로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등을 포함한 청원제도 관련 운영규정(훈령, 예규, 조례 등)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그 밖에 직제(시행규칙, 지자체규칙 등) 개정, 위임전결 규정(공통사항및 주관부서 사항) 개정 등 원활한 청원업무 처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

08. 청원심의회

청원법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 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청원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임을 감안하여 내부검토로 처리되는 민원, 제안보다 심층 검토와 처리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 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원 처리 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이 개정(2020.12.22.) 되었다.

시행령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 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청원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청원기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청원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원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⑦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정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설치해야 하고, 위원의 1/2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청원기관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이 청원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위원이 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원활한 심의회 운영을 위해 청원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해야 한다.
-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별도의 세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시행령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청원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청원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원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④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청원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청원사항과의 직·간접적인 관련성으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였다.
- 심의회 위원은 청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에서 제척되고,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은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원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심의회 위원이 청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청원기관은 그 규모와 업무 성격 등이 다른데, 청원심의회는 소속기관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A. 청원법 제4조에 따라 소속기관도 청원기관에 해당되므로 청원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법령해석 지자체 소속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설치 못한 경우 접수된 청원을 다른 청원기관에 설치된 심의회로 처리 가능한지?(법제처 해석사례 22-0107)

「청원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서는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심의를 하는 청원심의회를 해당 청원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청원심의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u>청원심의회의 설치</u>등 청원의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u>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청원심의회의 심의는 '청원기관의 장이</u> 설치·운영하는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판 사무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인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는 비록 그 수행하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판 사무의 범위 내에 있지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치되거나 주민의편의, 특정지역 개발 촉진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청원이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청원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 제출된 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그소속 기관을 특정하여 청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원법」 제4조제2호의규정체계와 청원기관의 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u>청원기관별로</u> 청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한 「청원법」 제8조의 규정체계 및 입법 취지에반하게 됩니다.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의 처리에 있어 청원심의회의 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이나 청원 처리 등의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청원기관의 장이고 청원심의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청원의 처리과정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것임. 따라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음
- ★. 다만, 종전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던 청원을 청원심의회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여 청원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원법이 개정된 점을 감안하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 심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청원심의회는 청원의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지?

- A. 청원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의 자체는 청원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 ▲. 다만, 청원기관별로 청원의 내용과 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청원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기보다는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청원법 제2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청원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함



청원심의회를 통해 청원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청원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 ▲. 청원법에서는 청원심의회의 심의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청원인이 제기한 청원의 내용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또한, 청원법 제21조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의에 탄력성을 유지하는 형식으로 제도가 규율된 것으로 판단됨
- A. 따라서 심의회의 심의는 청원내용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적절한 기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되며, 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처리기간(90일) 내에 청원이 처리되면 됨



청원심의회 위원 구성 시 성별, 지역 등을 균형있게 선정해야 하는지?

4. 청원법령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청원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선정할 수 있음.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 선정 세부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여, 성별, 지역별, 직능별 등 균형있는 위원 구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청원심의회 서면심의가 가능한지?

- A. 청원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청원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자체 운영규정에 근거를 마련할 경우 서면심의도 가능할 것이나, 기관이나 위원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실시하고 객관적이고 충실한 심의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출석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청원심의회를 통해 청원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청원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 ▲. 청원법에서는 청원심의회의 심의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청원인이 제기한 청원의 내용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또한, 청원법 제21조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의에 탄력성을 유지하는 형식으로 제도가 규율된 것으로 판단됨
- ▲. 따라서 심의회의 심의는 청원내용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적절한 기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되며, 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처리기간(90일) 내에 청원이 처리되면 됨



청원심의회를 개최하면 그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지?

▲.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청원처리 시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을 고려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다만, 청원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청원기관의 장이 심의회 운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면 됨



청원심의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가 청구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청원법령상 청원심의회의 회의록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청원기관의 장이 일반적인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규정한 청원법 목적에 비춰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청원심의회 위원들이 해당 청원 처리에 있어 공정한 심의를 하기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 하면 됨

09. 청원방법

청원법 제9조(청원방법) ①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하 "온라인청원"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은 기본적으로 청원인이 청원서에 성명과 주소(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해야 한다.
- 그러나, 청원법 전부개정('20.12.22.)으로 온라인 청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청원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청원은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는 시점인 2022.12.23.부터 가능하다.
- 개정되기 전 현행 청원법에서도 전자문서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었으나, 여기에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온라인청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개정법에서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현행「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 문서에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확대하며, 온라인청원의 경우 서명을 대체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청원을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시행령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 온라인으로 청원을 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해 본임임을 확인 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 관계법령 > ----

- ❖ 「전자정부법」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 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 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12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① · ③ ~ ⑤ (생 략)
 - ②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 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2.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민원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고,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데 민원과 유사한 청원도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지?

★. 청원이 민원에 해당되기는 하나 청원법 제9조에 따라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청원을 해야 하므로 구술 또는 전화로는 할 수 없음. 이에 반해 민원은 민원처리법 제8조에 문서(전자문서 포함) 이외에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청원법 제9조제1항 규정의 '전자문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 A. 개정되기 전 청원법에서의 전자정부법 상 전자문서는 공공기관에서 이용되는 전자문서로 법령에 규정된 서식을 전자화한 문서(전자유통 시행문, 법령상 규정된 각종 신청서 등)이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의 모든 정보(이메일, 휴대전화문자, 국민신문고 민원 형태 등)가 전자문서에 포함됨
- ▲. 기존에 문서만 허용되던 청원 방법을 온라인으로 확대하면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으로 청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범위를 각종 전자적 형태의 모든 정보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전자문서로 개정함



본인인증 방법 중 하나인 간편인증도 법에서 규정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본인확인 방법에 해당되는지?

- ▲. 청원법 제9조 제2항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전자정부법」제10조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자정부법을 근거로 본인확인 절차를 처리하면 됨
- ▲.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르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항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이면 '전자서명'에 해당하므로 인증과정에서 신용카드정보 등으로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간편인증 또한 청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에 해당하게 됨.



온라인 청원 시 본인 확인 후 청원이 가능한데, 청원법령상 개인정보의 처리 이용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A. 청원법 제9조는 청원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청원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임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게 됨
- A.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청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청원인은 해당 시스템에 회원(또는 비회원)으로 본인에 대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하게 되므로 청원법령상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성은 없음



제3자가 타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를 도용하여 청원이 신청된 경우,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사람이 이를 알고 해당 청원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청원 철회 또는 시스템상 해당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경우 삭제가 가능한지?

A. 청원은 청원법 제9조에 따라 청원인이 서명한 문서로 해야 하며, 차명에 의한 청원은 인정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청원은 내부 종결할 수 있는 사항이며 청원인 본인의 요청이 있다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련 주변상가에서 청원인 신청되었는데, 청원 신청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이해당사자가 해당 청원을 접수한 기관에 청원인의 명단을 알고 싶다고 요청할 경우 공개해도 되는지?

- A. 청원인의 동의 없이 행정기관에서 청원인 명단을 알려주는 것은 청원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임
- ★. 청원기관은 청원인이 자유롭게 청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함

10.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법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 ③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 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온라인청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
-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접수
-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
-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 5.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통지
- 6.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공개
- 7. 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의 보완 요구와 이송
- 8.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 9.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의 공개
- 10.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 1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
- 12. 그 밖에 청원의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서 제출·접수, 공개청원 운영, 청원서 보완·이송,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스템은 2022.12.23.부터 운영이 가능하다.
- 청원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 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온라인청원시스템은 2022.12.23.부터 시행된다면 그 전까지 접수하여 처리하는 청원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 온라인청원시스템이 운영되기까지는 현행 방식대로 처리하되, 온라인청원시스템이 운영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원 관련 문서들을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그 전까지 접수·처리한 문서는 스캔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시스템 개통 이후에는 자료 업로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함



온라인 청원은 '문서'로 청원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6조에 위배되는지?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온라인 인증수단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뒤 성명과 청원사항을 온라인상의 시스템에 게시하는 형식으로 청원을 제출할 경우 전자문서법 상 전자문서에 해당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권해석, 2018.1.23.)
- ★. 따라서, 온라인청원시스템 상 본인 확인의 전자적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성명과 청원사항을 시스템에 게시하는 온라인 청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로 제출되는 것이므로 헌법의 문서청원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서면으로 접수하려는 청원인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해도 되는지?

A. 온라인 청원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가능하며, 청원인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접수 거부하고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신청 할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해 줄 수는 있을 것임

11. 청원서의 제출

청원법 제11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 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 야 한다.
- 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 청원인은 청원을 제출코자 할 경우에는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 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청원사항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해당하거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로 청원할 수 있다. 다만, 공개청원은 온라인을 통하여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므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시점(2022.12.23.)부터 가능하다.
- 다수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고자 할 경우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원서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청원인은 청원서를 제출할 때 청원서에 청원의 이유 등을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같이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은 청원 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청원인은 청원서를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청원시스템이 운영되는 2022.12.23.부터는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원을 할 수 있다.

○ 다만,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임임을 확인)으로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 청원서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 ▲. 온라인청원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2022.12.23. 후에도 현행과 같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한 청원 제출은 가능함
- ▲. 또한, 위임을 통해 청원서 제출이 가능할 것임. 위임받은 자가 대신하여 청원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위임을 통한 청원서의 제출을 배척해야 할 근거규정이 청원법령에 존재하지 않음. 이 경우 수임인은 위임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민원처리법 별지 제3호서식 활용) 해당 위임에 관련된 사항은 민법 제680조부터 제692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위임에 관한 사항이 적용됨



내부 직원(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의 내부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기관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삭제 조치 한 경우, 이를 문제 삼아 청원할 수 있는지?

- ★.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면서 일반국민의 지위도 가지고 있음. 내부 직원(공무원이자 일반인)이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청원이 가능함. 내부 직원용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지위, 즉 해당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올리는 것으로 행정기관 외부의 국민이 행정기관에게 어떠한 작위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 청원권은 헌법에서 인정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요청'을 하는 것이 청원의 본질이기에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지위가 아닌 특별권력관계의 공무원으로서 지위로 청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보아야 함. 가령 가족이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정보를 받아보는 것처럼 기록원 소속 직원(공무원)이지만 기록원의 공공서비스(예, 공공기관 공개기록물 사본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위(일반 국민)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청원이 가능함



하급기관의 공무원이 상급기관에 질의 등을 청원으로 할 수 있는지?

▲. 공무원도 일반 국민의 지위로서는 청원을 제기 할 수 있음. 하급기관의 공무원이 제기하는 청원사항의 소관기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지위로 청원하는 경우에는 청원이 가능함. 다만,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제출하는 질의는 청원이 아님(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제출하는 질의는 민원처리법상 민원에도 해당하지 않음)



재직 중인 공무원이 본인의 인사와 관련하여 청원을 제기할 경우 청원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공무원도 일반 국민의 지위로는 청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청원은 안된다고 보아야 함.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1항에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외국인의 경우 청원법상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지?

- ▲. 원칙적으로 헌법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원의 주체를 국민에 한정하고 있음(헌법 제26조). 외국인의 청원권을 규정하는 직접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나, 헌법재판소 결정례('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 93헌마120, 99헌마494)를 통해 기본권 관련 사항내에서 청원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 법령안 심사 및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의 법령입안기준에 따르면 법률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분의 헌법학자들도 청원권 행사의 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



외국인의 경우 청원권의 제한이 없는지? 제한할 수도 있는지?

-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기본권 보호의 주체를 국민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까지 포섭하고 있는 점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하여 기본권 관련 사항 내에서는 외국인에게 청원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청원권을 가진 '국민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청원에 관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
- ★. 다만 헌법과 법률 등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기본권 분야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음.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포함한 참정권 등은 우리나라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외국인의 청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 밖에 외국인에 대한 제한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청원권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원칙임



법인은 청원권이 인정되는지? 단체에게도 청원권이 인정되는지?

- ▲. 청원법 제9조 청원방법에서 법인의 청원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에게 청원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법인은 공법인·사법인, 사단법인·재단법인 등 가리지 않고 모든 법인에게 청원권이 인정됨. 다만, 공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나, 공법인이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청원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임
- ▲. 다만, 단체의 경우는 청원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단체가 청원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청원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으로 청원을 제기하여야 함.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종교집단 등은 해당 단체 및 집단의 명의로 청원이 불가능함

12. 청원의 접수

청원법 제12조(청원의 접수)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 하여야 한다.
- 청원의 접수는 청원기관 장이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 후 청원 사항을 처리할 소관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청원사항을 수리하여 처리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원서 접수 후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청원사항은 법 제4조의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모두 청원 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원법상 청원의 내용 범위는 매우 넓다.

시행령 제8조(청원의 접수)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청원인이 청원서를 제출하면 청원기관 장은 제출된 청원서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제출된 청원에 대해서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청원서를 접수하였는데 청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 접수된 청원서의 청원 내용이 불명확하여 청원 처리의 예외로 처리할 수 있으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청원서 보완을 요구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다만,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청원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청원 처리의 예외로 처리할 수 있음



접수된 청원서가 청원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 그렇게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에 담당공무원의 부담이 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 청원법 상 청원심의회는 청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음. 따라서, 위임전결을 받은 담당공무원이 실무에서 부담이 큰 안건은 청원심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사안만을 청원 처리의 예외로 판단하여 처리하면 됨



접수된 청원서가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인 청원서 서식으로 청원하지 않은 경우 청원이 아니라고 보아 민원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 기존에는 별도의 청원서 신청 서식이 없었으나 청원법을 전부개정하면서 그 시행에 맞춰 청원법 시행규칙에 청원서 신청 서식(별지 제3호서식)을 마련하였음.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신청하는 청원은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청원을 제기해야 하고 청원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서식 작성 등을 보완요청한 후 접수하여 처리해야 함. 다만, 청원인인 청원서 서식이 아닌 방법으로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에 청원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있다면 이는 청원법상 청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함

판 례 | 청원의 성립요건 [대법원 선고 79도 1081 판결, 1979.8.21.]

청원서에 청원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원법 제6조에 의하면 참고자료는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하도록되어 있다) 청원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기명날인이 되어있는 등의 사소한 형식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청원서가 청원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동일인이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으로 청원, 민원, 진정(인권위), 제안 등을 각각 제기할 경우 처리 방법은?

- ★. 청원을 비롯하여 민원, 진정,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하여야 함. 제도들이 유사성을 띠고 있으며, 동일 혹은 유사한 취지의 청원 등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각 제도의 근거 법령에 따라 심의 여부가 달라질수 있으며, 그 결정 또한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음. 나아가 동일 혹은 유사한취지의 청원 등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배척할수 있는 근거규정이 상기 법령 등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 청원, 민원, 진정, 국민제안 중 어느 하나의 제도를 통하여 처리된 사안이 다른 형식으로(예, 민원 제기 후 답변을 받고 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제기) 제기된 경우도 위와 동일한 이유로 소관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함



동일한 내용으로 청원과 민원을 각각 제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 A. 청원을 처리하는 부서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다른 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원과 민원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는 동일한 답변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 우선, 청원으로 먼저 처리한 경우는 그 처리결과(심의회 심의 등 일반적으로 민원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거쳤을 것임)에 맞춰 민원 답변을 처리함. 민원으로 처리된 내용이 청원신청된 경우, 만약 심의회를 거친다면(안거치더라도 신중한 검토가 될것임) 민원 답변을 심의 자료로 활용 할 것인데, 통상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청원 심의 등을 통해 민원 처리와 달리 청원인이 원하는 답변을 받게 된다면 청원의 장점이 될 것임
- A. 다만, 민원 처리가 끝난 내용이 다시 청원 신청된 경우 청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청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청원인의 개인정보는 해당 청원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활용되어야 할 것임



청원서가 1월 31일 우편으로 도착하였으나, 담당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2월 2일 확인하여 접수 한 경우 접수의 효력 등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 청원서의 접수시점에 관하여 청원법령상 별도의 규정은 없고,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행정절차법」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민원문서가 행정기관에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1월 31일 당일부터 90일 이내에 청원을 처리해야 함(접수 당일은 초일불산업)



청원기관의 근무시간이 지난 뒤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청원서의 접수일은 언제가 되는지?

★.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전자정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이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청원기관에 청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청원이 청원기관에 의하여 지정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청원기관의 근무시간에 상관 없이 전자문서에 의한 청원(온라인 청원)이 컴퓨터에 입력된 날에 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보면 됨



청원사항이 정보공개에 관한 경우(형식은 청원이나 청원내용이 정보공개 요구이며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일때) 처리방안?

- A. 형식상 청원으로 제기되었으므로 청원처리 절차에 따라 90일 안에 처리하되, 정보공개를 할지 말지가 처리내용이 될 것임. 청원인의 요구대로 정보공개를 할 경우는 청원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정보를 공개하면 됨
- A.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할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와 정보공개심의회를 같이 거쳐야 함. 청원 처리를 위해 청원심의회를 거쳐야 하지만 그 청원사항이 정보공개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정보공개심의회도 거쳐야 하며, 처리는 90일내에 하면 됨(정보공개법 상 정보공개 여부 결정은 10일 이내 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청원처리에 관한 것이므로 청원처리기간에 따라 처리)



행정기본법 제36조제7항의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 중 '인권위 결정'이 있는데, 인권위 결정에 불복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없는지?

- ▲. 행정기본법 제36조는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공통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이의신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아니한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청원법상 청원과는 별개로 이해해야 함
- A. 현행 청원법령으로는 배척할 근거가 없으므로 인권위 결정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수 있음(재판의 경우에도 구제절차가 종료된 경우 청원이 가능). 청원제도의 본질적측면에서 사법적 판단 및 준사법적인 사안(인권위 결정 등)은 청원의 대상이 되지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배제할 근거가 없음



우편으로 접수한 청원에 대하여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 처리방법은?

4. 청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청원의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 대신 접수 사실을 통지해 주면 됨. 다만 청원기관에서 접수증을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청원인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접수증을 교부할 수는 있음



인권위 진정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의 침해가 포함되는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대상에 「대한민국 헌법」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의 침해는 포함되지 아니함

법령해석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대상에 「대한민국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의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09-0086, '09.4.28.)

위원회에 그 침해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민국 헌법」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위원회에 그 침해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는 인권으로 「대한민국 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제26조에 규정된 청원권에 대한 침해는 위원회에의 진정대상이 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이 명백합니다.

13.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청원법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 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개청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원사항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해당하거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로 청원할 수 있다.
- 공개청원 제도의 취지는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절차를 거쳐 청원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온라인청원시스템에서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하며, 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청원처리기간 90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개청원의 경우 공개결정일로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을 듣는 기간(30일)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처리기간 90일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청원기관 장은 청원사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공개 결정을 해야 한다.

시행령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한다.

- 1. 청원내용
- 2. 의견제출 기간
- 3. 의견제출 방법
- 4. 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청원내용을 공개하고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청원시스템이 운영되는 시점(2022.12.23.)부터 가능하다.
- 공개청원이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청원서를 전자화하여 온라인청원 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청원을 공개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원내용,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그 밖에 국민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온라인 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청원은 과거 청와대에서 운영 한 국민청원과는 다른 것인지?

◀. 청와대에서 운영했었던 '국민청원'은 국민소통 차원에서 시행하는 소통게시판으로 「청원법」에 따른 청원에 해당하지 않음 A. 청원법상 청원은 헌법의 심사 의무에 따라 수리된 청원은 모두 심사·처리하고 실명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정수 이상 찬성·동의된 청원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비실명으로 제출이 가능하므로 구분됨

< 「청원법」상 청원과 ^{舊)}청와대 '국민청원' 차이 >

구 분	「청원법」상 청원	^{舊)} 청와대 국민청원
제출 형식요건	실명 제출	비실명 제출
답변 요건	모든 청원에 대해 답변 (공개청원은 청원내용, 처리결과 공개)	일정수 이상 동의 청원에 답변 (30일 이내 20만명이상 동의시 답변)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20만명)이나 국회법상 국민동의청원(5만명)과 같이 청원법상 청원도 일정한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처리를 할 수는 없는지?

- ▲.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인이 제기한 청원을 공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인 검토가 요구됨. 현행법에서 인정되는 공개청원의 결정은 청원법 제8조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함. 즉, 공개청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청원기관의 장이 본 결정에 기속되지는 않음)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일정 수이상의 동의와 같은 주요 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 A. 현행법 체계에서는 국회법상 국민동의청원이나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기준으로 공개청원에 대해서만이라도 일정수 이상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청원법 개정이 요구됨. 일정수 이상의 동의는 청원의 제기에 있어 매우 중대한 요건에 해당하며 청원권의 직접적인 제한사항에 해당함. 청원권의 제한과 같은 청원법제의 주요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려 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도입이 불가함



공개청원은 청원인이 실명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비실명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 A. 비실명 청원의 가능여부는 공개청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됨. 비공개청원은 물론 공개청원이라 하더라도 청원인이 청원을 제기할 때에는 청원서에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입하고 서명을 하여야 함
- A. 공개청원의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청원을 요청한 청원인의 실명이 나오지 않고 청원내용만 공개되도록 조치하여 심의·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함.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 또한 실명이 아닌 아이디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음



공개청원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경우 청원내용에 개인정보(성명, 상호 등)와 같은 내용은 ** 처리하여 게시판에 게재하는데 근거는 무엇인지?

지. 「개인정보보호법」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에 따라 시스템 상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음. 또한, 온라인청원시스템 이용시 홈페이지 이용약관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여 실무자가 청원인의 별도의 동의 없이
 ** 처리해서 게시할 수 있음

- < 관계법령 > ---

- ❖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4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0



공개청원에 대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 상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지?

A.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현행 청원법령상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한 의견수렴 방식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시스템상 구축 방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다만, 국민의 의견이 보다 충실하게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스템 구축 시 반영할 계획임



청원심의회가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중에 청원인이 청원을 취하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청원인은 제기한 청원이 공개청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제17조에 따라 제기한 해당 청원을 청원기관이 처리하기 전에 언제든지 청원을 취하할 수 있음. 따라서 청원인의 공개청원 후, 해당 청원의 공개여부를 청원심의회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원인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중단하고 취하 처리를 하여야 함(청원 처리대장 서식에 처리내용을 취하로 기재하여 관리)



공개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부분만 제외하고 일부만 공개할 수 있는지?

- A.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결정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법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심의를 거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함
- ★. 공개청원의 공개여부는 법 제13조에 따라 청원심의회를 거쳐 결정해야 하며 시행령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부적합 결정을 해야 함. 공개청원서의 내용중 비록 일부라 할지라도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청원심의회 또한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만을 결정하여야 함(비공개 내용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분리해서 공개할 수 없음). 다만, 적극행정 차원에서 청원인의 청원을 공개하여 심의하고자한다면 청원인에게 청원서의 해당부분을 보완(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여 신청)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안내를 해서 처리하면 됨
- A. 다만, 공개되고 국민의견 수렴 중 공개청원의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되므로 보완요구는 공개청원의 공개결정 후 공개가 되고 나면 실무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청원인이 제기한 공개청원을 비공개 청원으로 변경하거나 당초, 공개청원이 아닌 청원(비공개청원)을 공개청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 공개청원의 비공개청원으로의 변경은 물론 비공개청원의 공개청원으로의 변경 모두 인정되지 않음. 근본적으로 청원을 제기함에 있어 공개·비공개 여부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은 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정에 따라 청원인이 청원서를 제출할 때에 공개 또는 비공개 청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공개청원으로 청원을 제기한 경우에도 해당 청원의 공개 여부는 청원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므로 심의회의 비공개 결정 외에 청원 신청 후 비공개 청원으로의 변경은 인정되지 아니함
- A. 실무적으로는 청원인이 소관 청원기관에서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청원을 취하하고 새로이 청원을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임



공개청원에 대해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지?

A.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청원 처리에 있어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법 제13조에 따라 공개청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시에는 심의회를 거쳐야 함

14. 접수·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청원법 제14조(접수·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공개청원의 경우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제6호 및 제8호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
-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 통지
- 4.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ㆍ종결 또는 이송 통지
- 5.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 6. 제8조 단서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관한 통지
- 7.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 8.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
- 9.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청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통지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규정의 청원 처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온라인청원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 다만,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결정, 청원의 접수 및 이의신청 접수에 대한 통지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통지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처리하면 된다.

--- < 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

• 별지 제1호서식 : 청원 처리 예외 결정 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 기피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 청원서

• 별지 제4호서식 : 청원 처리대장

• 별지 제5호서식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 이송 및 반복청원 처리 통지서

• 별지 제7호서식 :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 별지 제8호서식 : 청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 별지 재9호서식 : 공개 부적합 결정 등 이의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 이의신청 처리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청원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재판 등과 같은 수준으로 답변해야 하는지?

A. 국민이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면 충분함. 현재 판례에 따르면 재판 등과 같은 수준의 답변 의무는 없음

관 례 군인연금법 개정 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39, 2004. 5. 27.]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u>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u>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함으로써 충분하고, 비록 그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 례 청원처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39, 1997. 7. 16.]

헌법 제26조와 청원법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그 주관관서가)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이면 누구든지 널리 제기할 수 있는 민중적 청원제도는 재판청구권 기타 준사법적 구제청구와는 완전히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원소관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 · 공정 · 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 등에게 통지하였다면 이로써 당해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 등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

15.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청원법 제15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한다.
- ③ 그 밖에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 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사항 및 보완 기간을 표시하여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청원서를 이송하고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12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청원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口述) 등으로한다. 다만, 청원인이 보완 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한다.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청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해야 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에게 청원서의 보완 요청시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 으로 하되, 청원인이 보완 요구를 문서로 요청할 경우 문서로 해야 한다.
- 보완요구를 받은 청원인이 보완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 통지 할 수 있다.

○ 청원인이 청원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청원처리 기간 90일에 포함되므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에게 보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여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시행령 제13조(청원서의 이송)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의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의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청원기관이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청원서가 반복 적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소관 청원기관을 지정하여 접수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된 청원서 내용을 검토 후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또한, 접수한 후 처리과정 에서 다른 청원기관의 소관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도 소관 청원기관으로 이송하면 된다.
- 청원사항 중 일부가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청원서의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기관이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청원서가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경우 신속한 청원 처리를 위해 소관 청원기관을 지정하여 접수를 권고할 수 있다.
- 청원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의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청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A. 청원법 제15조에 따라 청원기관의 장이 기한을 정하여 청원서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되지 않은 상태의 당초의 청원서로 청원 처리를 하여야 함 ▲. 기한 내에 청원인이 청원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기관의 판단으로는 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 청원기관의 최초의 보완요구에 청원인이 전혀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으나 청원인이 청원기관에 제출한 당초의 청원서를 바탕으로 청원을 처리하면 됨. 다만, 청원기관의 보완요청에 청원인이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원을 반려할 수는 없음



청원의 신청이 있을 때 청원서로서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고 바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청원법 제15조에 따르면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보완요구는 일단 청원서를 접수한 후에 하여야 할 것이며 접수 전에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물론 접수 담당자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는 할 수 있으나, 접수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됨
- ★. 다만, 청원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청원 처리의 예외로 처리할 수 있음.



청원 심사 중에 청원인이 청원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청원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청원인은 청원서를 제출할 때에 청원서에 청원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본 조항의 '필요한 때'는 청원의 제출에 있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소관 청원기관에서 청원관련 처리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청원인의 보완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 다만, 실무적으로는 청원인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청원서에 대한 보완 필요성 등을 검토 후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식으로 처리하면 됨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보완 요구를 얼마 동안, 몇회까지 가능한지?

▲. 청원서의 보완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영 제12조에서는 보완 요구기간이나 횟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인에게 유리하도록 기간 등을 정해서 보완 요청을 하면 됨 A. 청원기관 장이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청원서의 보완을 요구하고 청원인이 해당기간 내에 보완을 하였음에도 청원기관에서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별도의 횟수 제한은 없으나 청원의 처리기간을 감안하여 적정한 기간을 설정해야 함



청원인이 보완 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 있는지?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법 제15조에 따라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받은 청원인이 청원서를 보완함에 있어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보완기간의 연장요청을 받은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보완기간을 정하여 연장결정을 할 수 있음



청원기관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은 청원인이 보완을 요청한 내용 이외의 부분까지 보완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A. 청원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청원인에게 보완요구를 하기 때문에 청원인은 요구받은 보완사항 이외의 것을 보완할 수 없음
- ♠. 다만, 실무적으로는 청원인에게 청원서 보완을 요청할 때 보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사항을 정해서 처리하면 됨



민원처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민원인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 민원문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도 이와 같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는지?

- ▲. 청원법령에는 보완요청 시 이에 불응할 경우 청원서를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원법령처럼 민원문서를 반려할 수 없으며, 청원법 시행령은 물론이고 청원법 제15조에서도 보완요청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반려를 규정하기는 어려움
- A. 다만, 청원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청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청원기관이 제기된 청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청원 처리의 예외 결정을 하지 않고 청원인에게 청원서의 보완을 요구했으나 청원인이 보완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처리예외결정으로 청원을 종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민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반려와 같은 종결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민원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기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민원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방안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를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반려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이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대통령령의 수준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청원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이 있으면 그에 답하라'는 심사의무를 전제로 제정되어 있고, 그 세부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함. 헌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답을 하여야 하는데 시행령의 수준에서 보완의 불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라고 대통령령에서 명할 수는 없음. 청원의 대전제는 국민이 청원을 하면 답을 하라는 것이기에 불리한 상태라도 청원을 처리해야 함



다부처 관련 청원사항이 접수된 경우 다부처 지정 주체는 누구이며,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게 되는가?

- ▲. 접수된 청원이 여러 부처의 소관인지 여부는 최초 청원서를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이 판단하게 되며, 청원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청원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면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는 있음) 청원기관의 장이 내리는 판단은 위임전결을 받은 담당자가 갈음할 수 있음
- A. 하나의 청원이 여러 기관의 소관으로 판단되면, 청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면 되며, 소관 기관이 여러기관이면 각 해당되는 모든 기관에 사본을 만들어 이송하여 처리하면 됨.



청원 접수 후 처리하는 중에 소관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이송은?

★. 청원서 접수 후 심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소관이 잘못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을 해야 함. 청원은 소관 청원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해당 청원을 처리할 수 있는 소관 기관으로 이송해야 함



타 기관으로부터 청원서를 이송받은 경우에도 접수절차가 필요한지?

A. 다른 청원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청원서에 대해서도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청원 처리대장에 기록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한편, 처리기간은 이송받은 기관에서 접수한 날부터 새롭게 계산함



국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이송할 수 있는데, 청원법상 이송과는 다른것인지?

- ★. 국회는 청원법상 청원기관에 해당하며 지방의회도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원법상의 청원(행정청원)과 의회청원(국회법상 국회에 대한 청원,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은 본질적으로 다름. 의회청원은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의 청원규정을 근거로 국회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처리결과(국회나 지방의회가 채택)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을 하는 것이지만 청원법상의 청원의 이송은 소관 기관을 찾는 것임
- ▲. 국회도 청원법상의 청원기관에 해당하므로 청원법에 따라 국회라는 기관에 제기된 청원은 그 소관 여부를 판단하여 타 부처로 이송하면 되며 이때의 이송은 청원법상의 이송에 해당함. 그러나 국회 내에서 운영하는 청원 절차에 따라 접수를 받아 그 처리결과로 정부로 보내는 이송은 청원법상의 이송과는 다름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지방의회 관할 구역상 행정기관(지자체)으로 보낸 경우 이를 청원으로 보아 처리를 해야 하는지?

- ▲. 청원의 이송에 대한 판단은 청원사항이 특정 기관의 소관인지 여부에 달려 있음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청원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음. 청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청원기관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A. 청원을 접수한 지방의회는 접수된 청원사항이 의회 소관사항인 것으로 판단되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원을 접수하게 되고, 청원사항이 다른 청원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청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해야 함
- ▲. 청원의 이송을 받은 기관은 청원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하고, 접수한 청원서에 대하여 청원서에 보완이 필요한 부족한 사항이 있는지,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지, 청원서 내용이 법 제16조의 반복청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됨

16.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청원법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 려야 한다.

- 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 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반복청원은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된 청원을 의미하며, 이 경우 최초 청원 이외의 청원은 반복청원으로 반려하거나 종결처리 할 수 있으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이중청원은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 기관에 제출한 청원을 의미하여, 이 경우 제출받은 기관에서는 소관 여부를 검토해서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타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이때 이송받은 기관은 청원을 접수하여 청원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이송받은 청원이 반복청원에 해당될 경우 반복청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반려 또는 종결)
-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원기관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특이민원 성격의 청원을 계속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청원기관의 장은 특이민원 성격의 청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청원법 제16조에 따라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 할 수 있음



청원처리를 받은 청원인이 동일 내용으로 동일한 기관에 청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 청원인이 제기한 최초의 청원이 처리되었음에도 청원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원을 새로 제기한 경우에는, 청원법 제16조의 반복청원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할 수 있음
- ▲. 이 경우 새로 제기된 청원이 앞서 처리된 청원과 동일한 내용인지를 판단하는 판단권자는 청원기관의 장이며 후행하는 청원이 동일한 내용을 담은 반복청원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시금 처리할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면 됨. 즉, 후행하는 청원이 처리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청원이 됨



청원인이 청원 처리결과를 받았으나, 이후 적용되는 법령이 바뀌어서 다시 동일 내용의 청원을 동일기관에 제기하는 경우 반복청원에 해당하는지?

- ▲. 접수된 청원이 반복청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하는 기관에서 반복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적용법령이 개정되는 등의 사유로 동일한 청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반복청원이 아니라 새로운 청원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
- ▲. 후행하는 청원이 동일한 내용을 담은 반복청원에 해당하는지는 청원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기준에 해당하는 '다시금 처리할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게 됨.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청원인이 청원을 제기 후 답변을 받고나서 구제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된 경우에 다시금 청원을 제기하면 새로운 청원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함. 이 경우 동일인, 동일내용, 동일기관에 제출된 청원이라는 점에서는 형식상 반복청원일 수 있으나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해야 함



청원인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요사항이 누락된 상태의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받은 후 이를 보완하여 청원을 제기할 경우 반복청원에 해당하는지?

A. 반복청원은 청원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기준에 해당하는 '다시금 처리할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게 됨. 보완하여 청원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원기관의 입장에서는 후행하는 청원을 새로 판단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접수 후 처리하면 될 것이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하면 됨

A. 처리의 실익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소송의 재심 법리 인정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즉,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정을 다시 보완하여 판단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아주 예외적으로 재심을 인정함



청원기관에서 청원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내용 불명확으로 청원 처리 예외로 통지하였는데 해당 청원인이 청원서를 보완하여 청원을 제기한다면 반복청원에 해당하는가?

- A. 반복청원은 청원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기준에 해당하는 '다시금 처리할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게 되며, 후행하는 청원을 심사할 경우 최초의 청원과 다른 결정으로 처리 될 것으로 판단되면 반복청원에 해당하지 않음.
- A. 청원 처리 예외의 통지를 받은 후 제기한 청원은 반복청원으로 처리될 여지가 적음. 당초의 청원을 처리 예외로 종결하였기에 보완된 새로운 청원이 제기되면 다시금 처리할 실익이 있게 됨.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다수의 청원인이 제기하거나, 동일인이 여러 기관에 청원을 제기한 경우 처리 방법은?

- A. 청원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청원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복수의 청원인이 연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청원을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함. 다만, 실무적으로는 청원심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묶어서 심의하여 처리한 뒤 청원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면 됨
- ★. 특정 청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각기 다른 청원기관에 제기한 경우, 청원서를 접수한 각각의 기관이 소관 청원기관에 해당할 시에는 청원을 개별 건으로 처리하여야 함. 소관 청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의 결과 특정 청원기관이 동일한 청원을 2건 이상 반복하여 접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복청원으로 처리하면 됨

17. 청원의 취하

청원법 제17조(청원의 취하) 청원인은 해당 청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청원을 취하할 수 있다.

○ 청원인은 청원 신청 후 해당 청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청원을 취하할 수 있음

시행령 제14조(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이 청원을 취하하면서 청원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



청원인이 청원을 취하할 경우 실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청원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청원의 취하가 가능하며 청원을 취하하는 경우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상으로는 청원기관 장의 위임전결을 받은 담당자가 취하원(취하원 양식은 따로 없으며, 취하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됨) 접수 후 청원 처리대장에 취하로 기재하여 종결 처리함



청원인이 청원을 취하하여 청원서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할 경우 원본은 행정기관에서 보관하고 사본을 돌려줘야 하는지?

A. 청원인이 신청한 청원을 취하하고 청원서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청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청원서를 청원인에게 돌려줘야 하고 이 경우 청원서는 사본이 아닌 원본을 의미함



구술이나 전화로 청원의 취하가 가능한지?

▲. 민원과 달리 청원 신청은 문서(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이 불가)로 해야 하므로 청원의 취하도 문서로 해야 할 것임. 다만, 실무상으로는 구술이나 전화로 취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취하의 의사표시가 확인 가능한 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해서 처리함



공동청원 취하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취하할 수 있는지?

A. 청원법 제11조제3항에서 공동청원을 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같은 법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청원의 처리 상황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이 대표자에게 통지되는 점을 종합할 때, 既 신청한 청원의 취하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할 수있음



취하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지?

▲. 청원법령상 취하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청원의 특성상 청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청원기관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하여 처리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청원인이 신청한 청원서에 대하여 스스로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청원 처리의 의무가 없어지며 청원기관에서는 취하원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함



취하원의 수리 여부를 청원인에게 별도 통지해야 하는지?

A.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제출된 청원서는 서면으로 작성된 취하원을 접수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취하원 양식은 따로 없고 취하 여부 확인이 가능하기만하면 됨. 이러한 취하원은 일종의 신고 성격이므로 취하원을 수리할 수 없는 여건이 있다면 수리할 수 없다고 통지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함으로써처리가 되는 것이고 청원인에게 별도의 통지는 할 필요 없음

18. 청원의 조사

청원법 제18조(청원의 조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사항이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하며,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청원의 처리를 위해 조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A. 청원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청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조사절차 없이 청원을 처리할 수 있음



청원조사 절차가 필요하여 조사를 할 경우 청원기관의 조사부서(감사과, 조사과 등)에서 수행해야 하는지?

▲. 청원조사는 청원기관의 조사부서에서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청원을 처리해야 하는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이며, 필요시 조사부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수 있음

19. 조사의 방법

청원법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2.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 4.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 ②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원기관의 장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해 조사를 할 때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소·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및 문서·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 청원법 제18조 및 제19조는 청원에 대한 조사의무와 조사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된 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그간 청원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민원에 비해 청원을 보다 엄격히 조사하여 처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차별화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 < 참고법령 > -----

- ◆ 「부패방지권익위법」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 견진술 등의 요구
-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 4. 감정의 의뢰
-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민원처리법 시행령」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 ③ (생 략)
 -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현장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⑥ ~ ⑧ (생략)



고충민원의 실지조사 시에는 조사 기간 등이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청원의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청원처리기간에 포함되는지?

▲. 청원법령에서는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청원치리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원법 제19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청원처리기간에 포함 됨. 다만, 민원처리법령에 따르면 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20.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청원법 제20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을 접수한 후 청원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 ②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협조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부서가 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사유, 진행 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 요청한 청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처리에 있어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요청해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회신해야 한다.
-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회신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진행 상황 및 회신 예정일등을 협조 요청한 청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신기간 연장은한 차례만 가능하다.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 한차례 회신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 당초 회신하기로 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해야 하는지?

- ★. 청원기관의 장이 최초의 협조요청을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였다고 하여 한 차례 회신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최초의 협조요청에서 정했던 특정 기간 대로만 회신기간을 정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음
- A. 청원법 제20조제2항은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이 회신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청원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협의를 통하여 회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협의를 통한 회신기간의 연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 한차례만 할 수 있음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부서)이 요청받은 회신기간까지 처리할 수 없을 경우 회신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공문으로 하여야 하는지?

★. 청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처리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 진행 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청원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알려주는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각 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임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협조기관으로부터 회신받는 기간은 청원처리기간에 제외되는지?

★. 청원법령에 의하면 처리기간에 제외되는 기간은 공개청원의 경개 여부 결정기관과 공개청원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시간만 해당됨. 따라서,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협조에 소요되는 기간은 청원처리기간에 제외되지 않고 산입되어야 함

21. 청원의 처리 등

청원법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제 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 단서의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리는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9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 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청원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청원 처리기간 90일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제외된다.

시행령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②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법 시행령 제15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 모든 청원은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어야 하나 기관별로 청원의 내용과 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모든 청원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보다는 청원심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을 하였다.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청원심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원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청원 심의회를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 90일에 포함된다.

시행령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 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해야 한다.
- 온라인청원시스템 운영되는 시점(2022.12.23.)부터는 동 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면 된다.



청원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90일 · 60일의 계산 방법은?

▲.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초일불산입, 토요일·공휴일 포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에 따르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공개청원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90일의 계산에서 제외됨.

< 민법과 민원처리법의 기간계산 비교 >

○ 일(日) 단위의 기간

구분	계산단위	초일 산입	토요일 산입	공휴일 산입
민법	일(日)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	×	〇 (기간만료일 경우 익일)	○ (기간만료일 경우 익일)
민원처리법 (6일 이상)	일(日)	0	×	×

(예시) 2021년 9월 1일부터 10:00부터 15일 * 9.21일 추석

• 민법 : 9월 16일

• 민원처리법 : 9월 24일

일	월	화	수	목	급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9.6일부터 15일 : 민법 적용시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9.21일이 아니라 9.23일

「민법」

-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청원서에 대하여 접수를 하면 해당 청원을 9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 A. 청원법령에서는 별도의 기간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규정(기간의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의한다)을 적용하여 90일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라 처리하면 됨
- ◄. 따라서, 민법 제157조에 따라 첫날은 산입하지 않고,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은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함.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만료됨(민법 제161조)



청원서의 보완요구를 한 경우, 청원 보완 기관이 청원 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민원처리와 다르게 운영되는 이유가 있는지?

- ▲. 청원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제21조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은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과 '처리결과를 알리는 방식'뿐임. 따라서 청원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청원 처리 기한에 포함 됨
- ▲. 청원서의 보완기간이 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9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시행령에 규정할 경우 청원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보완기간을 청원 처리기간에 불산입 할 경우 청원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예를 들면 청원기관이 상당한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함으로서 청원처리를 미룰 수 있음(처리 이익의 상실 등)



청워처리기간을 도과하여 처리한 청워 처리 결과의 효력을 어떻게 되는지?

A. 실제 청원을 처리하는 기관에서 청원처리기간 계산의 착오 등으로 90일을 넘어 청원을 처리하여 통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해당 처리에 위법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유효한 처리결과로 보아 청원법상의 처리는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이와 같은 청원처리기간을 도과한 청원처리로 인하여 청원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



청원심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 4. 모든 청원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어야 함. 그러나, 심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취지를 고려할 때, 청원사항의 처리에 있어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단순한 비판, 불만표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 등 구속력이 있는 결정에 대해 그 결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법률 개정 등 청원기관 권한 밖의 제도개선 요구, 청원기관 단독 권한을 넘어서는 내용에 대한 청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을 것임. 해당 청원사항이 심의회의 생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원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서 처리할 수는 있음
- ★. 법령 문안의 의미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떠한 청원에 대해 단순 불만표시 관련 청원이라 판단하여 청원심의회 심의 없이 처리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인지 여부를 청원기관의 장이 판단해야 하고, 다툼이 생겨 법원으로 간다면 법원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이 내린 판단이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인지" 여부를 보고 결정을 할 것임



청원심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 중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규정되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관 청원기관에서 해당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해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을 처리할 수 있음. 법령, 조례, 지침 등 각종 명시적인 규정에 반하여 답변이 불가한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없이 청원기관의 장이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청원인 요구대로 청원이 처리된다면 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A.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될 수 있는 청원사항이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으며, 청원 취지대로 추진 중이거나 즉각적인 시행은 곤란하더라도 추진할 계획이 공식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함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을 단순한 민원이라 판단하여 민원처리법상 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청원인이 제기한 청원을 민원으로 변경하는 사안은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하게됨. 설령 청원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청원으로 접수된 사안을 담당공무원이 민원으로바꾸어처리할 수는 없음. 본 사안은 법률 개정사항(법률에 이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함)에 해당하며 시행령 수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둘 수 없음. 법률 개정시 변경조건,변경사항의 통지,청원인의 동의여부,공개청원과의 관계,심의위원회의 심의여부,절차법상의 법리검토 등이 요구됨. 따라서,현행법상 간단한 민원성 청원이더라도청원으로 처리해야 하며,다만,청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심의회 없이 처리할 수 있음
- A.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종결하기 위해서는 청원인의 청원의 취하가 있어야 함. 청원내용을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가져와서 처리해주고자 하더라도 청원의 취하 없이는 불가능함. 따라서, 반드시 민원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청원인에게 청원을 취하하고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다시 민원을 제기하도록 안내하여 처리를 해야 함



청원기관에서 청원을 접수 후, 타 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이송받은 기관의 청원 처리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이 제기한 청원이 본인 기관의 소관인지를 판단하게 됨. 청원서가 명백히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송 처리해야 하며, 청원을 소관 접수하여 처리하던 중 특정 부분이 타 기관의 소관임이 확인되었다면 사본을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됨. 이 때 청원을 이송받아 접수하는 소관 청원기관에서는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만 처리하면 되며, 이송받은 기관에서 접수한 날부터 새롭게 청원 처리기간을 계산함



우편으로 접수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등기로 통지했는데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청원법령에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원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면 됨. 다만, 청원과 유사한 제도인 민원에 대해서는 주소불명으로 반송될 경우 이는 '주소가 불명확한 자'로 볼 수 있으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3호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고 이 경우 해당 반송물은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종결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임



청원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경우 이러한 통지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 청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청원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러한 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음

재결례 청원사건처리기간연장결정취소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8 재결, 2003. 2. 10.]

청구인이 한 청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u>청원처리기간연장결정통보는</u> 단순한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적인 법집행행위로서의 <u>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u>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中略)····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청원을 수리한 피청구인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원을 수리한 피청구인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청원내용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원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원처리기간연장결정통지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보아 그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제결례 청원각하결정 통보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7-06862 재결, 2017. 5.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청원에 대해 각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u>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를 함으로써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각하 등으로 비록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결정이 바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볼 수는 없어</u>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2. 이의신청

청원법 제22조(이의신청) ① 청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 2. 청원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 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인은 공개청원으로 신청한 청원에 대해 공개 부적합 결정을 받거나, 청원처리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온라인청원시스템이 운영되는 시점(2022.12.23.)부터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다.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③ 청원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이의신청서에 신청 취지와 이유를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이의신청서는 청원서 제출과 마찬가지로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해야 한다.



청원처리기간(90일) 내에 청원이 처리되지 않아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A. 청원처리기간 내 처리되지 못한 청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원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 이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청원기관이 처리하여야 함을 의미함. 이의신청의 인용 결정은 새로운 청원의 접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용일로부터 다시금 90일간 청원심사를 거쳐 청원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청원도 민원과 같이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

▲. 민원처리법 제35조제2항에서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원법 제22조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능함



법에서는 이의신청을 문서로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 ▲. 이의신청의 방식으로서 청원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문서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 청원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9조제1항은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또는 거소)를 기입하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10조에서도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체계상 청원서가 전자문서로 제출되었음에도 그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법 제22조가 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 따라서, 청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이의신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청원법 제22조의 이의신청 대상(공개 부적합 결정, 처리기간 내 미처리)은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 ★. 청원처리결과는 처분성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임. 다만 청원인이 제기한 청원의 내용이나 청원기관의 결정에 따라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청원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대상으로서 ①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 ②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처리기간 내 미처리는 모두 처분성이 인정될수 있음.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 요구가 가능할 것이나, 이의신청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청원법이며, 청원법에서는 이의신청 대상은 상기 두 가지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행정기본법이 아닌 청원법의 이의신청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됨
- ★. 원칙적으로 처분성은 특정 결정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안의 개별적·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함. 공개청원의 공개부적합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처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A. 또한,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에 따른 청원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될 수 있음. 처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90일의 청원처리기간 동안 청원기관의 장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음에도 청원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부작위로서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 등'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A. 청원처리결과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되다 하더라도(예, 청원 처리의 예외 결정에 따른 종결을 불수리 처분으로 본다면) 청원법상 규정된 이의신청 대상 이외의 사항으로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는 없음(해당 법률에서 이의신청 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일반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법제처 법령해석)



청원처리결과에 청원인이 불복할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이며, 해당 처리결과에 대해 다시 청원이 제기될 경우 처리 방법은?

- A. 청원법은 제22조제1항에서 ①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청원처리 결과에 관한 불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만일 청원인이 청원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새로운 청원을 제기하거나, 청원이 아닌 다른 제도를 통하여(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원사항의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 ★. 다만, 청원처리결과에 불복한 청원인이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청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반복청원으로 처리될 수 있음. 반복청원은 다시 제출되는 청원의 기간에 제한되지는 않음(가령 청원 처리결과를 받고 수년이 지날 뒤에라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며 다시 처리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반복청원에 해당할 경우 반려 또는 종결이 가능)



청원법 제22조의 이의신청 대상(공개 부적합 결정, 처리기간 내 미처리)의 경우 이의신청 제기와 상관없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한지?

- ★.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 취지는 청원기관 내부의 구제절차 없이 행정심판 등 쟁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원기관 스스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원인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본 제도는 공개 부적합 결정이나 처리기간 내 미처리된 청원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 확립은 물론, 이러한 처리를 최소화하는 장치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음
- A.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행정심판위원회나 사법기관에서 당초 청원 처리결과가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성을 다툰 뒤 각하 또는 본안심리를 하게 됨. 이는 민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반대로 행정청이 스스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처분성이 있다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청원법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A. 민원처리법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 결정 내지는 그 취지의 통지는,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원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그 결정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두8676, 2012.11.15.)고 보고 있으므로, 청원법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 공권력 행위의 기준 > ----

❖ 행정주체의 어떠한 행위가 공권력적 행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행위의 근거법령, 목적, 방법, 내용,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규정의 존재 여부 등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청원인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개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날 또는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간계산에 있어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되는지?

A. 이의신청 제기기간은 민법에 의한 기간 계산방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30일의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여 계산함



청원인이 청원사항에 대한 청원기관이 불수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A. 청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공개청원 관련 공개 부적합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원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

23. 청원제도의 총괄 등

청원법 제23조(청원제도의 총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점검·지도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의 지위로 청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청원법 제23조에서 청원법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게 총괄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체적으로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 및 지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시행령 제19조(청원 관련 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원을 활성화하고 청원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분석·가공하여 활용할 수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청원을 활성화하고 청원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개인정보 제외)를 분석·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

24. 청원의 사후관리

청원법 제24조(청원의 사후관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 에 반영할 수 있다.



청원법 제24조를 근거로 청원 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청원인의 정보를 해당 청원처리에 대한 만족조 조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지?

★. 청원법 제24조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청원처리 과정에서 수집한 청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청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소관업무에 해당하며,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25. 모해의 금지

청원법 제25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원법 제25조에 따라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모함하여 해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안 된다.

26. 차별대우의 금지

청원법 제26조(차별대우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원인을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청원법 제26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원인을 차별 대우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27. 벌칙

청원법 제27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원법 제25조에 따라 타인을 모해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청원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